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장중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(안 제23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